

저출산 고령화 시대 금융전략

권 세 훈*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그 속도가 유난히 빠른 편이다. 더욱이 근래의 저금리 저성장 경제기조와, 최근에는 정치권의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와 이로 인한 여야 갈등 상황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미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추세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에 대해 개관하고, 이들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경제적 노후 대비와 관련하여 연금제도의 개념 및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고려한 국가적 재정정책 및 개인의 금융전략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론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두 가지 유형의 경제적 위험이 있다. 하나는 너무 일찍 죽는 사망위험(mortality risk)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오래 사는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다. 장년기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지만, 노년기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망위험은 미래에 경제적 순(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하며, 장수위험은 미래에 경제적 순(純) 지출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망위험과 달리 장수위험의 경우는 가족 또는 사회 공동체의 도움이 충분하거나, 본인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한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스스로든 또는 타인의 도움에

*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ehoon38@smu.ac.kr

의해서든 경제적으로 노후보장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평균수명이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주의가 보편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후의 경제생활도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장수위험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 경제 전체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또한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저출산은 미래의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고령화 문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인구 구조를 낳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전인구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므로 개인들이 시장을 통한 위험분담 거래를 하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정부 등의 공적부담으로 귀착되는 경향이 있다. 근래에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또 이미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적부담은 결국 세금에 의존하므로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불공정성 시비가 생기거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각종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의 문제들에 대해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차원 정책방향 및 개인차원의 금융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최근 인구 및 경제환경 변화의 이해

1.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사회의 고령화 정도는 통상적으로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분한다. 즉, 이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90년 5.1%에서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4년 12.7%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과 2026년경에는 각각 14%와 20%를 넘어서서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한 세대로 인식되는 30년만에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를 거쳐 초고령화 사회로 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이다. 참고로 아래 <표 1>은 주요국가의 고령화 진행 단계별 이행 기간을 비교한 표이다.

<표 1>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단위: 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한국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115	46	72	24	17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39	53	18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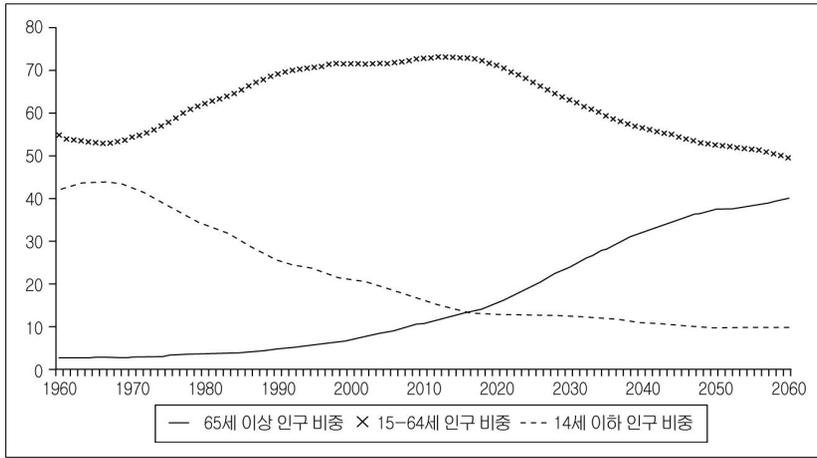
자료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한편 고령화 지수(aging index)는 15세 이하 대비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그리고 총부양 비율(total dependency ratio)은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와 나머지 인구의 비율로, 아동 부양비율(youth dependency ratio)은 14세 이하 인구와 15~64세 인구의 비율로, 노인부양 비율(oldage dependency ratio)은 65세 이상 인구와 15~64세 인구의 비율로 정의한다.¹⁾

다음의 [그림 1]은 앞서 설명한 부양인구 지표의 정의에 따라 한국의 부양인구비율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1970년 이후 아동인구 비중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2000년 이후 노인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 추세, 그리고 2020년 이후 예상되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 비중의 급격한 감소 추세이다. 향후 한국 사회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 노인을 부양할 경제인구 비중의 급격한 감소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 부담의 급증 역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고령화 관련 인구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문헌에 따라서는 경제활동 진입 연령을 20세로, 노인인구 진입 연령을 60세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림 1)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연령별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2.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사회 문제들

고령화 추세에 따르는 큰 이슈로는 노인빈곤 문제가 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나 경제적 차원의 노후준비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낮은 수준이다. 물론 노후준비는 경제적 부분 외에도 건강과 문화, 정서적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이다.

노후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수단은 연금(pension)이다. 한국의 연금 제도는 소위 3층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먼저 1층은 국민연금으로 취지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2층은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하며 회사나 본인이 적립 자산의 운용을 책임진다. 3층은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연금으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에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2>는 3층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 및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표 2〉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의 삼층 구조

1층	국가	기초연금		자격 기준에 따른 지급
		국민연금		의무 가입(특수지역 제외)
		특수지역 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군인연금	군인 퇴직연금			
2층	기업	퇴직금		사내 적립, 기업 퇴직시 일시불 지급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 사외 적립, 사전적으로 수금액 확정
			확정기여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사외 적립, 운용 성과에 따라 지급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는 과세이연 및 연금통산, 자기 부담으로 퇴직연금 추가 설정, 자영업자 등 본인이 퇴직 연금 관리
3층	개인	개인연금		
		연금보험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저축	한도 내 불입금 세액공제	

그러나 노후 생활비의 수입원을 주요국과 비교한 다음의 〈표 3〉을 보면, 한국의 경우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금제도 도입 이후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3〉은 한국 노인들은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든지 아니면 자녀나 친척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이 낙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3〉 노후 주요 수입원 국제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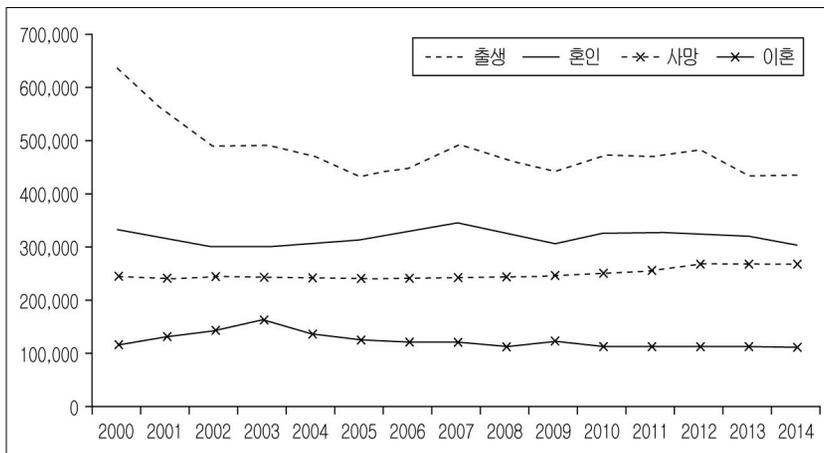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독일	
	1980	2010	1980	2010	1980	2010	1980	2010
근로·사업소득	16.2	37.5	15.2	20.1	31.3	24.3	5.3	9.6
공적·사적연금	0.8	13.2	63.9	67.0	38.7	67.5	87.1	84.3
자녀·친척도움	72.4	30.1	0.3	0.7	15.6	1.9	0.2	0.4
기타	10.6	19.2	20.6	12.2	14.4	6.3	7.4	5.7

자료: 강창희, 한국에서의 은퇴준비와 연금, 미래에셋, 2012. 12

고령화 추세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론 중 하나는 노인인구가 중위투표자 (median voter)가 되어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윤상호와 이창우, 2013). 특별히 복지나 기타 주요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 노인인구 이익에 편향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또는 미래 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성 시비가 유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복지나 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경제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노력, 협력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한편 고령화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그림 2]를 보면 매년 국내 혼인 건수가 30만건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최근 들어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수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근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효과로 판단된다. 이혼 건수는 연간 10만건 이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생자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특별히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40만명과 50만명 사

[그림 2] 최근 국내 인구 통계 추세와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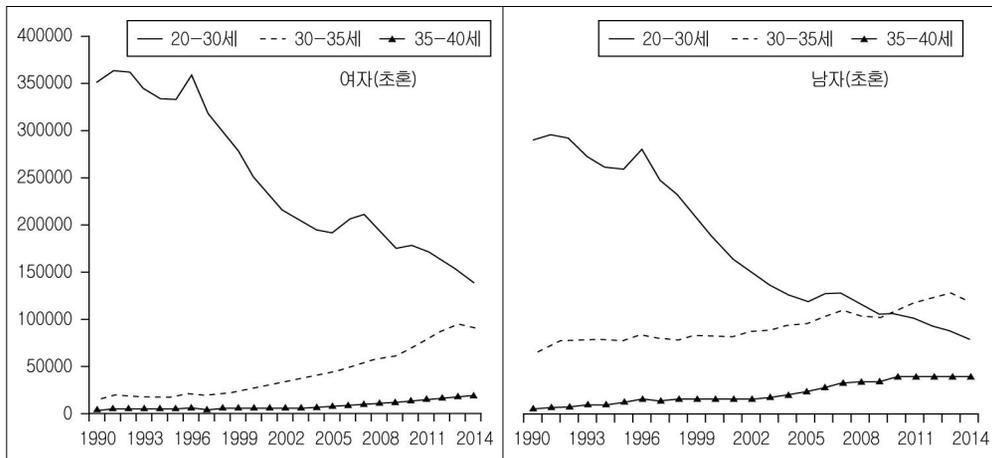
단위: 출생과 사망은 명수, 혼인과 이혼은 건수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2명 내외의 합계출산율²⁾을 의미한다.

한편, [그림 3]을 보면 남녀 공히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요즘 젊은 세대를 일컬어 ‘연애’와 ‘결혼’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로 삼포세대라고 한다. 삼포세대는 2011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로서, 이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용어로 많은 이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용어이다.

[그림 3] 남녀별 초혼 연령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3.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경제환경

올해 4월 기재부가 발표한 최근경제동향 문건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 및 일본 엔화 약세”

2)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 Age-Specific Fertility Rate)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저유가와 주택 및 주식시장 회복”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해 1월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낮춘 3.1%로 제시하였다. 한편 일부 투자은행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식음료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은 1% 미만이며, 담배값 인상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0.3% 선으로 사실상 “제로 물가” 시대에 접어들었고, 일부에선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소비 진작에 고심하고 있지만, 막대한 가계부채와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미지수다.³⁾

오래 전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일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영하(零下: sub-zero)금리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영하금리시대가 되면 예금자에게는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물리게 되고, 대출자는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게 된다.

실제로 덴마크의 한 소형은행이 올해 2월부터 일반예금에 0.5%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들어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영하금리로 단기국채를 발행하였으며, 특히 스위스는 올해 4월에 10년물 국채를 영하금리로 발행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0.05%로 동결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는 아직 공식 기준금리가 영하인 나라는 없지만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가 0%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은 실질 기준금리가 -3.9%로 이미 영하 실질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⁴⁾

문제는 세계적으로 이같은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 연금이나 보험 등의 장기투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너무 낮은 수익성에 실망한 장기투자자들이 좀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기

3) 짚어지는 D의 그림자(동아일보, 2015. 4. 10) 기사 참고

4) 유럽발 영하 금리시대 금융이변 속출(서울경제신문, 2015. 4. 10)과 스위스 10년물 국채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발행(파이낸셜 뉴스, 2015. 4. 10) 기사 내용 참고

위해 전보다 더 많은 위험자산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작년 4/4분기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중소형주를 대거 사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자산 투자 증가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투자결과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투자 증가로 인해 미래의 부나 연금 등의 장기적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나 개인 차원 모두 안정적 노후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국가나 개인의 재정 전망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불확실성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Ⅲ. 저출산 고령화 대비 경제적 지원정책의 이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소 내지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경제적 지원정책의 범주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아동부양 인구 지원정책으로 출산 장려와 육아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둘째는 경제활동 인구 지원정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자산축적 및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셋째는 노인부양 인구 지원정책으로 노인인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지원정책은 그 내용 및 효과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책을 설계하거나 실행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아동인구와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관점에서, 그리고 특별히 노후대비 지원방안으로는 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개인들의 금융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 제도의 세대간 형평성(equity)과 연대성(solidarity)

앞에서 제시한 <표 2>를 보면 연금제도 구조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데, 3층의 연금제도 중에서도 특별히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국민연금의 연혁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어 있는 바, 이미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석유과동 여파로 인해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무기한 연기되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988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과 도시 지역 확대적용을 통해 1999년부터 전 국민 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부분적립방식(partial funding)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중도에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기금이 고갈된다. 왜냐하면 제도도입 초기에 가입 유인을 제공하고, 단기간에 의미 있는 정도로 연금수급을 개시하기 위해서, 초기 가입자일수록 자신의 기여분에 비해 더 큰 수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완전적립이 아닌 부분적립 방식으로 설계된 데에는 사회보험 및 사회적 연대를 고려한 정책적 목적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의 특성으로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의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이후의 근로세대가 이전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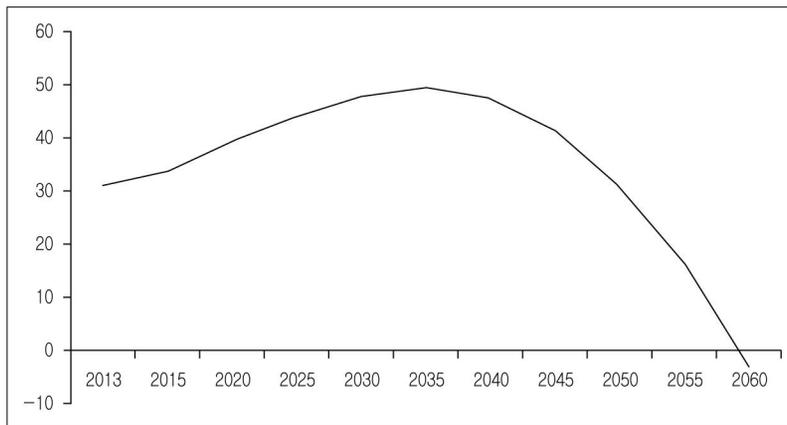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에서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의 문제점으로 최고소득 상한이 존재해 중상 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이에 관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고 한다. 둘째,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주요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의 정당성 및 그 크기나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튼 국민연금은 설계시점에서 이미 미래에는 기금고갈 또는 보험료율 인상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4]는 2013년도 국민연금 재정추계 자료에 의거해, GDP 대비 적립금 비율의 예상 추이를 도식화한 것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5년 무렵에 GDP 대비 50% 수준까지 육박하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60년 경에는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근본적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4]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 비율 추계

(단위: %)



자료: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적립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기본적 방안으로는 ‘가입자 증가’와 ‘기여 증가(보험료율 인상)’와 ‘급여 축소’와 ‘수익률 증대’의 네 가지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급여를 축소하는 몇 차례의 제도변화를 통해 고갈시점을 늦추었으며, 2013년 연금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예상시점은 2060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기 추계가 그러하듯 기금고갈 시점 예상 역시 많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특히 향후 기금운영 수익률에 크게 의존한다. 참고로 감사원은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⁵⁾ 즉 기금 운용수익률이 1% 더 상승하면 기금고갈 시기가 5년 더 늦춰지는 효과가

5) 연합뉴스 2015년 3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 9~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있는데,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수익률 예상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부터는 매년 근로 세대가 납부하는 기여분을 은퇴 세대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부과방식(PAYGO)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때 기여분이 지급분보다 많으면 기금에 적립되어 운용되고, 기여분과 기존 적립분이 지급분보다 작다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앞서 [그림 1]의 인구 구성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근로 세대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향후 급여축소나 기여증가가 없다면 PAYGO 운영에 있어 추가적 예산의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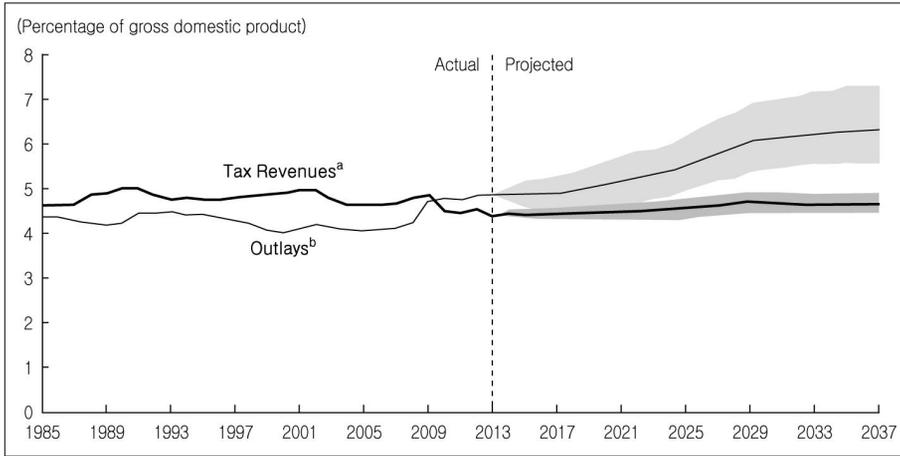
그러나 고갈시점 이전에 연금체제로 편입되는 근로세대가 크게 늘어나거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기여율을 올리거나 은퇴세대가 수급하는 연금소득을 낮춘다면 기금고갈 시점은 미래로 더 이연되는데,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추정은 모형의 모수 가정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나므로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그리고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비율이 감소하면서 기금이 고갈된 이후부터는 PAYGO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많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규모는 GDP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보험료율이 19.6%인 반면 한국은 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GDP 대비 급여 지출 수준 역시 1%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연금수급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과 유사한 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⁶⁾ 이러한 통계자료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기금의 현재 적립 수준 및 향후 적립 증가 가능성 정도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제도는 PAYGO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지급보다 수입이 조금 더 많아 기금의 적립금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조만간 지급이 수입을 초과하고 그러한 적자 현상이 지속되어 그동안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그림 5]를 보면 2009년경부터 사회보장 세수가 지출에 미달되어 적자가 지속되고 있

6) 자료 출처는 2013 국민연금 재정추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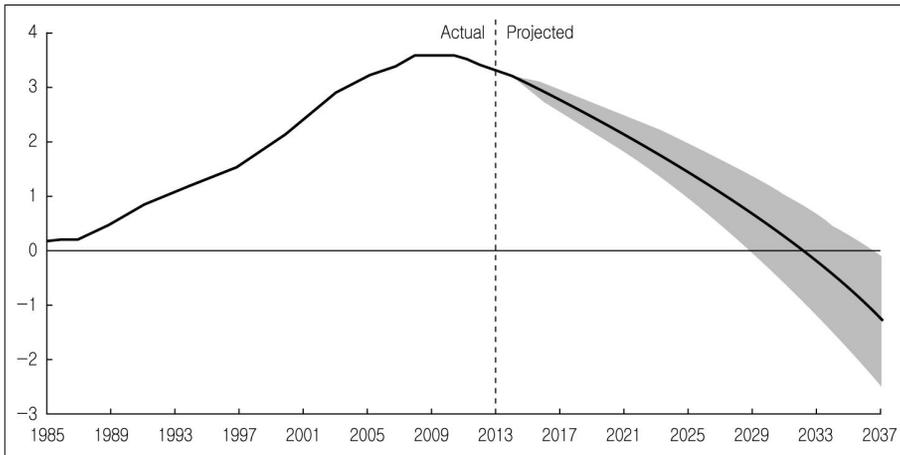
[그림 5] 미국 사회보장 기금의 세수 및 지출 추이



출처: CBO Report

*2013년 이후는 추정치이며 음영부분은 실현가능성 80% 구간임

[그림 6] 미국 사회보장 기금의 적립금 추이 및 고갈 예상시점



출처: CBO Report

2013년 이후는 추정치이며, 음영부분은 실현가능성 80% 구간임

으며, 향후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림 6]은 [그림 5]의 내용에 따라 사회보장 기금의 적립금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흑자 기조 하에서 GDP 대

비 적립금 비율이 2008년에 최대 약 3.5% 수준까지 이르렀다가 감소되고 있으며, 2033년을 전후하여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경우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더 적립 수준이 낮고 기금고갈 시점도 더 빨리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보장 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의식 내지 위기의식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별히 2005년 부시대통령이 사회보장 개혁 방안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 민영화 논쟁이 촉발된 바 있으며, 이때 논쟁에 참여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닌 의견들이 개진된 바 있다(Stiglitz et al., 2008).

이때 보수 진영은 사회보장 기금 고갈 대비 방안으로서 개인계좌(personal account) 방식으로 사회보장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 부시대통령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 내지 파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시스템 위험인 장수위험을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한 일반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영화 이행에 따른 당장의 연금수지 악화나 먼 미래의 재정 부담을 비교하면서 사회보장 민영화의 문제점을 공격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의 국민연금 정책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상당히 먼 미래 시점의 고갈시점을 더 미래로 이연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기여와 수급에 대한 세대간 형평 및 연대의 정도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2. 퇴직연금 제도 및 장수위험 거래

앞의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1층 국가연금 외에도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가연금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 가능성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위험관리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나 여러 연금상품의 장단점, 그리고 개인의 필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자에 적합한 금융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퇴직급여제도에 설명하면, 2005년 1월 제정되어 동년 12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제”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 defined benefit)”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 defined contribution)”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내적립하는 “퇴직금”과 사외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개인퇴직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이때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세법상 손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절감된다. 근로자는 이직시에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은퇴소득이 보장된다. 한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효세율 측면에서 더 유리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퇴직연금의 기본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종업원 퇴직시점의 지급액이 사전적으로 정해지며, 그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기업에게 있으며,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 자산에 대한 운용을 기업이 책임지고 지시한다. 한편 DC형은 사전에 정해진 퇴직연금 기여금이 미리 정해지고 퇴직급여 수준은 적립 자산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DC형은 DB형과 달리 퇴직연금 적립 자산 운용을 근로자 개인이 지시하고 결과도 책임진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12월 기준 퇴직연금 도입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상용근로자의 51.6%인 총 5,353천 명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2013년말 대비 10.3%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275,547개로 이는 국내 전체 사업장의 16.3%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07조 6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0% 증가하였다. 그리고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DB형과 DC형 차지 비중이 대략 6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다른 자료를 참고할 때 퇴직연금 유형별 비중은 전년과 대비하여 DB 형은 약 1% 감소하고 DC 형은 약 4% 증가하였다.

〈표 4〉 퇴직연금 유형별 비중 현황(2014. 12 기준)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P 특례
근로자수(천명)	5,353	3,149	2,119	85
비중(%)	(100)	(58.8)	(39.6)	(1.6)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도입현황

한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는데, 이는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하는 저축계정을 의미한다. IRP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되며, IRP 자동이전 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가 가능하다. IRP 계좌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는 IRP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자금을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불입 할 수 있다. 단,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은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700만원까지 인정된다.⁷⁾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법정사유에 한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한편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위험부담이 상당하므로, 기업들은 DB형보다는 DC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표 5〉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기업연금 가입자 수가 DB형은 감소하고 DC형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운용자산 규모 증가율 역시 DB형보다 DC형이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다.

7)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이후 개인연금 부분에서 설명한다.

〈표 5〉 미국 기업연금 가입자 수와 자산 규모의 변화

년도	가입자 수(단위: 백만명)			자산 규모(단위: 십억 달러)		
	전체	DB	DC	전체	DB	DC
1975	38	27	11	260	186	74
2007	82	19	67	6,090	2,647	3,444

자료출처: US Department of Labor, 2010,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Abstract of 2007 Form 5500 Annual Reports

한편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노조의 압력이나 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DB형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 자산운용 위험을 매각하거나 헷지하려는 기업들의 장수위험 거래 수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DB형 기업들의 장수위험 이전거래가 활발한 편인데(김재철 외, 2010), 주요 요인으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로 인한 자산관리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연금부채 및 가치평가에 관한 회계제도 변경과 연금 및 연금보호펀드(Pension Protection Fund) 관련 규제 강화라는 정책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위험(longevity risk)은 역사적으로 무시 또는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장수위험은 기존의 신용위험(credit risk)이나 시장위험(market risk) 등과 통계적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효과(diversification)에 이용될 경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전인구적 장기적 문제이므로 시장을 통한 위험분담이 어렵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정부 등의 공적부담으로 귀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 지원 등의 결과로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남겨진 부분적인 위험, 즉 잔여 장수위험을 거래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 거래수단 및 관련 금융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맞물려 궁극적으로 개인별 위험거래 및 위험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즉 거래하기 좋은 잔여 장수위험이 되도록 정부 정책 지원 등을 설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장수위험은 사망위험과 자연헷징(natural hedging) 관계에 있으나 불완전하므로 베이

시스 위험(basis risk)이 남는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을 동시에 판매한다면, 사망률이 감소하면 사망보험 부문은 이익이 남고 연금보험 부문은 손실이 발생해 전체 이익은 안정된다. 그러나 사망위험과 장수위험의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헷징 정도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장수위험을 최초로 보유한 경제주체(original owner)가 항상 최선의 위험부담자(best owner)인 것은 아니므로, 장수위험을 이전(longevity transfer)하는 거래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향후 DB형 기업들이나 연금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장수위험 이전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본시장 발전이나 금융정책 지원을 통해 장수위험 이전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권세훈, 2010).

3. 개인연금 제도와 개인의 금융전략

다음으로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 보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연금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근래에 사상 초유의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세후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절세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이 있지만, 본고는 소득세법에 의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에 대해 살펴보고, 세제 비적격이지만 연금상품으로서 특별한 장점을 지닌 개인연금보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업권에서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성이 강조되며,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위험의 정도는 펀드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연금 수급 시 연금소득세를 면제 또는 저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금 기여 납입 시점에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중도 해약이나 인출 시에 이미 제공된 세제 혜택에 대한 환급 등의 제재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연금저축은 2013년부터 근거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변경되면서 최소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단 세제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적으로 12%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연금수급 시 연금소득세가 연령에 따라 3~5% 부과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과 합산한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한편 생명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연금저축보험만이 종신행 연금으로도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시점에 세제혜택이 없으나, 대신 중도 인출과 증여와 일시금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는 모든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계약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평생비과세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소액으로 본인의 노후대비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연금저축을 이용하고, 비교적 큰 금액으로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다면 연금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IV. 결론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의 재정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 모두 심각한 도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본고는 특별히 노후 연금소득 이슈에 대해 논의하면서 관련 제도와 상품 등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국가의 재정정책과 개인의 금융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3층 연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은 당분간 적립금 수준이 계속 증가하겠으나 부분적립이라는 제도적 특성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60년 경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소위 PAYGO로 지칭되는 부과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적립기금 고갈을 연금제도의 파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형평과 연대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들도 PAYGO로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적립 기금의 규모 역시 크지 않음

면서도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적립 규모 증대나 고갈시기 이연만이 문제해결책의 전부가 될 수는 없으며, 그 기회비용을 적절히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적연금제도가 있는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두 종류가 있다. 두 연금 모두 은행, 증권, 보험 세 유형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제도가 존재하며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퇴직 연금에 대해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향후 DB형보다는 DC형 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퇴직자산의 운용 및 위험관리 책임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든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증대되고 저금리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DB형 연금자산 관리의 부담이 날로 증대되는 추세다. 유럽의 경우 DB형 연금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련 장수위험을 이전하는 거래들이 등장하였다. 한국도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들이 생겨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와 잦은 이직, 그리고 비정규직 증대 등의 결과로 IRP 계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개인연금과 결합되어 주요한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많다.

한편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세제적격 금융상품으로 기여금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금융투자회사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의 세 가지 유형의 상품이 있으므로, 각자의 필요나 선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있는데,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같이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므로, 장기저축 목적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상 설명한 3층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은 기본적 노후보장을 제공할 뿐이며, 사적연금과 결합되어 각자 필요한 수준의 노후보장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소득이나 국가재정 수준에 맞추어 설정하고, 세제 등의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사적연금의 규모를 증대시켜야 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향후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금융상품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다수의 일반인들을 위한 전문가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권세훈 (2010), 저출산 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어린이 펀드와 장수위험의 거래, 자본시장 Weekly 2010-48호, 자본시장연구원.
- 국가통계포털KOSIS 웹페이지 kosis.kr
- 국민연금공단 웹페이지 www.nps.or.kr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보건복지부.
- 김재철·권세훈·홍원구 (2010), 저출산 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학술용역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 고령화리뷰.
- 윤상호와 이창우 (2013), “고령화와 복지정책”, 고령화리뷰(2013), 보험연구원.
- 홍원구 (2015), 저금리 시대와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자본시장 Weekly 2015-11호, 자본시장연구원.
- Blake, D., Casirns, A., Dowd, K., MacMinn, R. (2006). “Longevity bonds: Financial engineering, valuation, and hedging,”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3, pp.647~672.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3). The 2013 Long-Term Projections for Social

Security: Additional Information.

Krugman, P. (2005). "Confusion about Social Security," The Economists' Voice Volume 2, No. 1, Article 1.

Stiglitz, J., Edlin, A., DeLong, B.(2008). The Economists' Voice: Top Economists Take on Today's Problems, Columbia University Press.

UN (2002). World Population Ageing 1950~2050, Population Division, DESA, United Nations.